

제2발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해설가 운영 방안

이규태(산림청)

□ 개념

- 숲해설가 : 숲과 관련된 환경생태적·문화적인 지식을 갖춘 자로서 해설 대상자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숲해설을 계획, 수행 및 평가할 수 있는 전문가를 말함
- 숲해설가 교육과정의 인증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해설가 양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으로 인증받는 것을 의미

□ 현황

- 1988년 자연휴양림이 조성된 이후 숲 해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민간단체 주도로 양성해 오고 있는 상황
 - 산림청에서는 '99년 이후 자연휴양림, 국립수목원 등에 숲해설가를 운영중

<산림청의 숲해설가 운영 현황>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활동 인원(명)	119	88	112	120	122	117	125
참여 인원(명)	7,305	29,405	47,756	41,868	51,787	63,338	92,240

- 전국적으로 숲해설가 수와 숲해설가 양성을 위하여 개설된 교육과정의 정확한 수는 파악하는데 애로
 - 전국 100여개 민간단체 등에서 숲해설가를 양성중으로 총 교육이수자 6,947명 중 2,419명이 현재 숲해설가로 활동중인 것으로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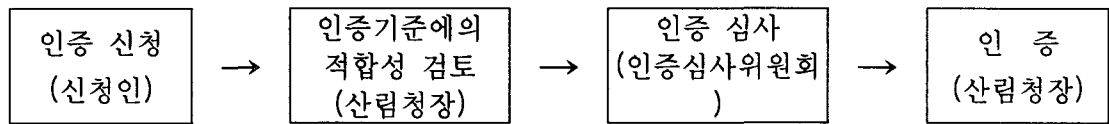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해설가 제도

(1) 법적 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7조 내지 제10조

(2) 숲해설가 교육과정 인증제도

- 인증의 대상 : 숲해설가를 양성하는 숲해설가 교육과정
 - 숲해설가에 대한 인증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임

○ 인증권자 및 절차



※ 인증시 그 사실을 고시하고 신청한 자에게 인증서 교부

○ 인증표시 및 유효기간

- 인증을 받은 자는 숲해설가 교육과정에 인증을 받았음을 표시
- 인증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

(3) 숲해설가 교육과정 인증기준(안)

○ 과정별 교육내용

- 초급(140시간 이상) : 산림환경교육론, 산림과 생태계, 산림과 인간·환경 윤리 및 산림환경 교육·교수 학습 방법 등
- 중급(60시간 이상) : 주제해설 프로그램 개발, 산림환경교육 교재 개발, 산림환경교육 평가 및 숲해설 기법 등
- 고급(30시간 이상) : 숲해설 프로그램의 기획·운영 등

○ 교육 시설 : 강의실, 실습장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기타 사항

- 초급과정에는 산림청장이 개발·보급하였거나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최소 3개 이상 운영
- 각 과정에는 반드시 평가수단이 포함되어야 하며 전문 강사가 교육 실시

법제처 심사(안)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2006. 7.

농 립 부
(산 립 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1. 의결주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국민의 산림휴양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산림의 문화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5.8.4. 공포, 법률 제7676호)됨에 따라 동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산림청장은 시·도 또는 지방산림청 기본계획구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업무는 산림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제4조)
- 나. 자연휴양림의 지정대상 산림, 시설의 종류·기준 및 타당성평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성·관리를 산림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8조)
- 다. 산림욕장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성·관리를 산림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라.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등산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를 산림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마. 산악구조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편성·운영 등을 정하고 산악구조대원의 교육·훈련 등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내지 제13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 라. 기 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

제2조(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1. 시·도의 기본계획구 :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행정 구역. 다만,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을 제외한다.
2. 지방산림청의 기본계획구 : 지방산림청의 관할 구역중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

②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역계획구를 단위로 하여 수립한다.

1.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계획구 : 시·군·구의 행정 구역. 다만,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을 제외한다.
2.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이하 “국유림관리소”라 한다)의 지역계획구 : 국유림관리소의 관할 구역중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소재한 구역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산림문화·휴양 여건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산림문화·휴양 기능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정한 지역(이하 “산림문화·휴양통합권역”이라 한다)을 기본계획구 또는 지역계획구(이하 “계획구”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구의 명칭은 기본계획구 앞에 해당 시·도 또는 지방산림청의 명칭을,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구의 명칭은 지역계획구 앞에 해당 시·군 또는 국유림관리소의 명칭을 붙인다. 다만, 산림문화·휴양통합권역을 계획구로 정한 때에는 계획구 앞에 해당 산림문화·휴양통합권역의 명칭을 붙인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6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개요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4조(기초조사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등이라 함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민법」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3장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5조(푸른숲선도원 육성의 위탁) 산림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푸른숲선도원의 육성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민법」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산림문화·휴양 또는 청소년 산림교육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의 조성 등

제6조(자연휴양림 지정대상 산림)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림을 말한다.

1. 경관이 수려한 산림
2.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한 산림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헥타르 이상(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헥타르 이상)인 산림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적지평가조사결과 자연휴양림의 조성적지로 평가된 산림

제7조(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기준 등)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욕장, 야영장, 야외탁자, 전망대, 야외공연장, 대피소, 방문자안내소, 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임산물판매장, 매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등 편익시설
2. 취사장, 오물처리장, 화장실, 오수정화시설 등 위생시설
3. 자연탐방로, 자연관찰원, 전시관, 천문대, 목공예실, 동·식물원, 숲속교실, 숲속수련장, 산림박물관, 교육자료관 등 교육시설
4. 철봉, 족구장, 민속씨름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썰매장, 테니스장, 어린이놀이터, 물놀이장, 패러글라이딩, 산악승마시설, 산악자전거코스, 다목적잔디구장 등 체육시설

5. 보안등, 공중전화 등 전기·통신시설
6. 숲가꾸기, 임산물채취 등 임업체험을 위한 시설
7. 그 밖에 자연휴양림 조성목적에 부합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임도·순환로·산책로·숲체험코스 및 등산로는 제외한다)은 100,0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자연휴양림시설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10,0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4.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해당 자연휴양림의 산림상태,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산림욕장은 경관이 좋고 경사가 완만한 산림을 대상으로 산책로·벤치·간이쉼터 등 산림욕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2. 야영장은 자연배수가 잘 되는 지역으로서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설치할 것
3.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은 산사태 등의 위험이 없고,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 배치하되, 바깥의 조망이 가능하도록 할 것
4. 취사장·오물처리장·급수대 및 화장실 등은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추도록 시설하되, 산림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식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5. 자연관찰원은 자연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을 선정하여 다양한 수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할 것
6. 산책로와 자연탐방로는 노폭을 1.5미터 내외로 하되, 접근성·안전성·산림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하여 설치할 것
7. 숲속수련장은 강의실·숙박시설·광장 등을 갖추어야 하며, 1회에 1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설치할 것
8. 임업체험시설은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설치하여야 하며, 체험활동에 필요한 기본장비 등을 갖추어 할 것

④제1항 및 제3항의 사항 이외에 휴양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자연휴양림시설의 타당성평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방법·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타당성 평가자는 산림·환경·건축 또는 토목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으로 구성
2. 타당성 평가는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자연휴양림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실시

3. 타당성 평가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확인한 후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연휴양림시설 타당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규모·위치 등이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

제9조(산림욕장시설의 종류·기준 등) ①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산림욕장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안에서는 산림욕장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다.

1. 산책로, 벤치, 의자, 전망대, 대피소 등 편익시설
2. 오물처리장, 화장실, 음수대 등 위생시설
3. 자연관찰원·자연탐방로 등 교육시설
4. 철봉, 평행봉, 그네, 배드민턴장 등 체력단련시설
5. 그 밖에 산림욕장 조성목적에 부합하여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해당 산림욕장의 산림상태,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편익시설은 경사가 완만한 산림을 대상으로 산책로·벤치·간이쉼터 등 산림욕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것
2. 오물처리장·화장실 등은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추도록 시설하되, 산림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식수는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
3. 자연관찰원은 자연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을 선정하여 다양한 수종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할 것
4. 산책로와 자연탐방로는 노폭을 1.5미터 내외로 하되, 접근성·안전성·산림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산지의 형질변경을 최소화할 것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이외에 산림욕장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자연휴양림 등의 위탁)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 등”이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로서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민법」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립가·임업후계자·산림기술자 또는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실무경험이 15년 이상인 자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제5장 등산로 등

제11조(등산로 실태조사의 위탁) 법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단체”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민법」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등산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12조(산악구조대의 운영 등)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산악구조대는 산림항공관리본부에 편성하여 운영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산악구조대(이하 “산림항공구조대”라 한다)는 산악지역에서 등산인의 조난·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구조대와 「소방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구조대·구급대가 서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협력하여 운영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사항 이외에 산림항공구조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산림항공구조대원의 교육 및 훈련) 제14조제1항에 따라 편성된 산림항공구조대원은 연 1회 이상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14조(권한의 위임) ①산림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6호는 국립수목원장 및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각각 위임하지 아니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숲해설가의 선발·활용
2. 법 제11조에 따른 등산안내인의 선발·활용
3. 법 제23조에 따른 등산로의 조성·보전 및 관리, 등산로에 대한 실태조사, 등산로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4. 법 제25조에 따른 등산로의 휴식년제 실시
5. 법 제26조에 따른 등산로 등의 협의매수
6. 법 제27조에 따른 등산교육의 실시

②산림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의 수립·변경 및 시행
2. 법 제5조에 따른 지역산림문화·휴양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기초조사의 실시

③산림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28조에 따른 산악구조대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산림항공관리본부장에게 위임한다.

④산림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의 조성
2. 법 제15조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시설의 타당성평가
3. 법 제18조에 따른 국유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실시
4.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유 산림욕장의 조성

제7장 별 칙

제15조(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제32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2006. 7.

농 립 부
(산 립 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1. 의결주문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국민의 산림휴양에 대한 다양한 요구와 산림의 문화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2005.8.4. 공포, 법률 제7676호)됨에 따라 동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숲해설가 교육과정 및 등산안내인 교육과정 인증의 신청 절차, 기준 및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표시를 하도록 함(안 제2조 내지 제4조)
- 나. 인증심사를 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회의·운영세칙 및 수당에 대하여 정하고, 효율적인 인증심사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10조)
- 다. 숲해설가 및 등산안내인의 활동 지역과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 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조성계획 절차,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 및 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제반 사항을 정함(안 제13조 내지 제16조)
- 마. 산림욕장의 조성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9조)
- 바. 등산로 실태조사의 대상지역, 조사방법 및 등산로 휴식년제에 관한 제반 사항과 등산교육은 등산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내지 제2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 라. 기 타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제2조(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절차 등) ①「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프로그램 인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숲해설가 교육과정 또는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과정 인증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사 결과 인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그 인증을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이를 보완 또는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른 보완 또는 개선의 요구를 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개선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위원회는 그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4항에 따른 보완 또는 개선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에 따른 기간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따른 사항 이외에 인증 신청 및 인증서 발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조(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기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인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등의 인증표시)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의 인증표시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산림청 소속공무원 중 산림문화·휴양 업무와 관련이 있는 4급 또는 연구관이상의 자로서 산림청장이 임명한 자
2. 산림문화·휴양, 산림생태, 산림환경교육, 숲해설 또는 산악등반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림청장이 위촉한 자
3. 산림문화·휴양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법」상의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산림청장이 위촉한 자

③위원회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과반수를 넘도록 구성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간사는 산림청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 또는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조 내지 제7조의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인증심사원의 활용) ①산림청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증심사원을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른 산림기술자중 산림경영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자
2. 산림분야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실무 경험이 10년 이상인 자
3. 산림문화·휴양, 산림환경교육 및 숲해설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실무경험이 5년 이상인 자

②인증심사원의 선발 및 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숲해설가의 활용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하 “숲해설가 활용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발한 숲해설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2. 법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4. 그 밖에 숲해설가 활용기관의 장이 숲해설가의 활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

② 숲해설가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 및 산림문화·휴양자원의 교육·체험에 관한 내용
2. 산림문화·휴양의 진흥에 관한 내용
3. 산림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내용
4. 산림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내용

제12조(등산안내인의 활용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산림청장, 국립수목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이하 “등산안내인 활용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발한 등산안내인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속하거나 또는 인근의 등산로
2. 법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에 속하거나 또는 인근의 등산로
3.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에 속하거나 또는 인근의 등산로
4. 그 밖에 등산안내인 활용기관의 장이 등산안내인의 활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역

② 등산안내인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등산교육 및 안내에 관한 내용
2. 등산문화의 진흥에 관한 내용
3. 산림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내용
4. 법 제28조에 따른 산악구조대 활동 등 등산인의 안전에 관한 내용

제3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의 조성 등

제13조(자연휴양림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지번·지목·지적·소유자별 토지조서 1부
2.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연휴양림예정지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및 구역도(축척 5천분의 1 또는 6천분의 1) 각 1부

4. 설치하고자 하는 주요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조성방향에 대한 개요서 1부

②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연휴양림 예정지 실태조사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자연휴양림 예정지 적지평가조사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산림청장이 소관국유림에 자연휴양림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양림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다만, 신청인, 명칭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시설물(기반시설 및 이용자의 이동을 위한 길을 포함한다)의 종류·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서 1부

2. 산림경영계획서 1부

3.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임야도) 1부

4.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서 1부

5.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방법 1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설의 종류·규모·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및 산지의 형질변경 기타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내용이 자연휴양림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자연휴양림조성계획의 수립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시·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본다.

제15조(자연휴양림시설의 타당성평가) ①시행령 제8조제3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연휴양림시설 타당성평가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 이외에 자연휴양림시설 타당성평가를 위한 평가자의 자격요건 및 위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 ①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는 해당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용을 참작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10호 내지 제14호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한 국유 또는 공유 자연휴양림의 경우에 한한다.

1. 국민 및 그 수행자
2.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3. 만 6세 이하인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1급 내지 3급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7.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8. 「참전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9. 「5·18민주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10.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원
11. 법 제12조에 따라 선발된 푸른숲선도원
12. 당해 자연휴양림구역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자
13. 당해 자연휴양림구역 안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자
14. 그 밖에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한 자가 각각 정한다.

제17조 (자연휴양림의 휴식년제 등) ①법 제18조제3항에서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휴양림의 명칭
2. 휴식년제 실시의 목적
3. 대체 자연휴양림의 이용 안내
4. 위반에 따른 벌칙조항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8조제4항 단서에서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예방, 병해충방제 및 유해조수구제를 위한 출입
2. 군, 예비군 및 경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출입
3. 산림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에 필요한 출입
4.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의 산림

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5. 송·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보수를 위한 출입

제18조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신청 등)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자가 동법 제19조에 따라 자연휴양림의 지정해제 또는 지정변경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자연휴양림 지정해제 또는 지정변경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9조 (산림욕장조성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산림욕장조성계획의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욕장조성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설물(이용자의 이동을 위한 길을 포함한다)의 종류·규모가 표시된 시설계획서 1부

2. 산림경영계획서 1부

3. 시설물종합배치도(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 입야도) 1부

4. 조성기간 및 연도별 투자계획서 1부

5. 산림욕장의 관리 및 운영방법 1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서와 함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림욕장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시설의 종류·규모·배치, 자연경관의 보존 및 산지의 형질변경 기타의 산림욕장조성계획의 내용이 산림욕장의 조성목적에 부합되는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은 산림청소관 국유림의 산림욕장조성계획의 수립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으로, “시·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 본다.

제4장 등산로 등

제20조 (등산로 실태조사의 대상지역등) ①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등산로 조사의 대상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의 정상 지점들을 연결하는 능선부의 주요 등산로

2. 역사적·문화적·생태적으로 보전·관리가 필요한 등산로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수목원과 그 주변의 등산로

4. 도시주변 및 관광지 등의 등산로로서 일반국민이 많이 찾는 등산로

5. 그 밖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산로관리청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산로

② 등산로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등산로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
2. 등산로에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및 등산의 난이도 등 등산정보
3. 등산로의 주변식생 및 훼손정도 등 관리상태
4. 등산로가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

제21조(등산로의 휴식년제)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산로의 명칭
2. 휴식년제 실시의 목적
3. 대체 등산로의 이용안내
4. 위반에 따른 벌칙조항
5. 그 밖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산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25조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예방, 병해충구제 및 유해조수구제를 위한 출입
2. 군 및 예비군의 작전업무수행을 위한 출입
3. 산림내 원주민의 일상생업에 필요한 출입
4. 「산불예방 및 진화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림보호지도원의 산림 보호활동을 위한 출입
5. 송·배전선로의 순시 및 유지·보수를 위한 출입
6. 그 밖에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산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등산교육의 위탁) 법 제27조제2항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산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2. 「민법」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등산교육·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5장 벌칙

제23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또는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